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9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0.

발 의 자 : 최은석 · 안철수 · 서명옥
이종배 · 권영세 · 진종오
구자근 · 신성범 · 김상훈
한지아 · 김성원 · 김장겸
이상휘 · 서일준 · 송언석
이종욱 · 김태규 · 김기웅
이준석 · 박덕흠 · 김기현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 지원 및 취업훈련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은 교육·컨설팅 등 비금융적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특정한 별도의 규정이 미비하여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 또는 취업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인 금융채무 과다와 재기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·취업 지원을 위하여 정책자금 대출 및 신용보증 시 폐업 소상공인을 우대하고, 정책자금을 포함한 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·감면을 연계한 제도를 수립·운용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민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6 신설).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6(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 등) ① 기금의 관리

· 운용자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제22조 제3항에 따른 대출을 할 때 폐업 소상공인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재창업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,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,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에 따른 채무조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조정을 연계한 채무조정·감면 제도를 수립·운용할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 또는 취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.

1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
2.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
3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대상,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2조의6(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 등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자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할 때 폐업 소상공인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② 정부는 재창업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,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,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에 따른 채무조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조정을 연계한 채무조정·감면 제도를 수립·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 또는 취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.</u>

1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
신용보증기금
2.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
기술보증기금
3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
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
단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
른 지원의 대상, 기준 및 절차
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로 정한다.